의 안 번 호

1674

【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】

# 검 토 보 고 서

#### 1. 검토경과

O 제 출 일 자 : 2020. 11. 6.(금)

O 제 출 자 : 중구청장

O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11. 6.(금)

O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12. 1.(화)

### 2. 제안이유

- O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경제·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 · 지원하여
- O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한 가족도시 구 현을 도모하고자 함

#### 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책무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(안 제4조 ~ 안 제5조)
- 실태조사 (안 제6조)
- O 지원사업 (안 제7조)
- O 사무의 위탁 (안 제8조)
- O 포상 (안 제9조)

# 4. 근거법규

○「건강가정기본법」제3조, 제5조, 제15조

#### 5. 검토의견

- O 사회적 변화에 따른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, 시대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1인가구 복지지원 정책 및 안전한 사회통합을 위 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
- O 제반규정 검토한 바.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근 거 법 규

# 「건강가정 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가족"이라 함은 혼인·혈연·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.
- 2. "가정"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 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·양육·보호·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.
- 2의2. "1인가구"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.
- 제5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야 한다.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 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, 가정친화적 환경 조성, 양성 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 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.

#### 제15조(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)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0.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